-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-

'17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계획(안)

'17. 9.

인천항만공사
(감사팀)

'17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계획(안) 요약

○ 4대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함양, 사전 폭력예방의식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

□ 실시계획

○ **(교육대상) 전 임직원**

○ **(교육일시 및 장소) 1차 9.19(화), 2차 9.26(화) / 5층대강당 (2회 총4시간)**

○ **(교육강사)** 김문미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)

[붙임 1 : 강사 이력] 참조

□ 교육내용

○ **(폭력예방 통합교육 필요성)** 폭력에 대한 상호연관성 설명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필요성 제시

○ **(폭력 개념과 이해)** 폭력 개념과 이해 및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인식 교육

○ **(폭력방지 및 처벌관련 법령)**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,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

○ **(예방 및 대처방법)**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

○ **(실천방안 모색)** 자신의 성평등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 및 실천 구체방안 모색

[붙임 2 : 강의 계획서] 참조

□ 소요예산 : 850천원

○ 강사료 : 800천원(회당 2시간 400천원)

○ 현수막 제작 : 50천원

○ 예산과목 : [판관]교육훈련비-사내교육비

□ 협조사항

○ 교육 참석자 공통부문 2시간(회당) 인정 : 인사관리팀

-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-

'17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계획(안)

Ⅰ 실시배경

□ 실시목적

○ **(건전한 공직문화 조성)** 4대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함양, 사전 폭력예방의식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

○ **(예방교육 내실화)** 성평등과 인권 관점 교육을 통해 예방교육 내실화로 각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및 실행력 제고, 성평등 제고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

□ 법적근거

○ **양성평등기본법률** 제30조,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

○ **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○ 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○ **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

※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 법정 의무교육 실시 필요

- 각 연 1회, 1시간 이상(통합교육시 연 4시간 이상) 실시

-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

○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('18.2월/여성가족부), 부진기관 분류 시 특별관리 및 기관평가 반영, 언론공표

*** 부진기관 기준 : 직원 이수율 50% 미만, 각 교육 유형별 총점 70점 미만, 추진실적 허위 보고,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 미이행 등**

Ⅱ 실시계획

□ 교육 운영

○ **교육 시간** : 1회당 2시간 이상(연간 4시간 이상)

○ **교육 방법**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

○ **교육 일시 및 장소**

- **1차 폭력예방 통합교육 : 9.19(화) 10:00 ~ 12:00, 5층 대강당**
- **2차 폭력예방 통합교육 : 9.26(화) 10:00 ~ 12:00, 5층 대강당**

□ **교육 강사 : 김문미**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)

[붙임 1 : 강사 이력] 참조

□ **교육 대상 : 전 임직원** (기관장 포함 간부직원 필히 이수)

※ 파견직원, 외부상주인원 등을 포함한 현재 근무중인 전 직원

※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부서배치에 앞서 공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고충상담원 소개 등을 포함한 "성희롱 예방 교육" 추가 실시

□ 교육 내용

○ **(폭력예방 통합교육 필요성)** 폭력에 대한 상호연관성 설명으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의 필요성 제시

○ **(폭력 개념과 이해)** 폭력 개념과 이해 및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인식 교육

○ **(폭력방지 및 처벌관련 법령)**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,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

○ **(예방 및 대처방법)**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

○ **(실천방안 모색)** 자신의 성평등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 및 실천 구체방안 모색

[붙임 2 : 강의 계획서] 참조

□ **교육 평가**

○ 부실교육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실시

[붙임 3 : 교육만족도 평가지] 참조

□ **소요예산 : 850천원**

○ 강사료 : 800천원(회당 2시간 400천원)

○ 현수막 제작 : 50천원

○ 예산과목 : [판관]교육훈련비-사내교육비

Ⅲ 향후계획

○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: ’18. 2월

-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(shp.mogef.go.kr) 입력

Ⅳ 협조사항

○ 교육 참석자 교육이수시간 공통부문 2시간(회당) 인정 : 인사관리팀

붙 임 1. 강사이력 1부.
2.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의계획서 1부.
3. 교육만족도 평가지 1부. 끝.